

201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안 내 말 씀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18페이지 참조)
- 전자팩스로 접수할 경우 3월 27일 ~ 4월 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수신 서비스 등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26일(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CONTENTS

○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
○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2
○ 납부서 작성 요령	13
○ 제출 방법 안내	15
○ 토탈서비스 가입 안내	16
○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보험료 신고 요령	16
○ 보수총액 범위 예시	18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무료서비스 안내	19
○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안내	20
○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 안내	20
○ 기타 안내	
●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21
● 보험료 경감 특례제도 안내	22
● 산재보험 건설업·별목업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적용 안내	22
● 소규모 건설공사 당연적용(의무가입) 안내	22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신청 안내	22
● 건설업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제도 안내	23
○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안내	23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변경 안내	23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안내	24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건설업 등의 보험료 자진신고·납부대상 사업주는 2012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13년 4월 1일(월)**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계좌이체 신청사업장도 일시납 및 분납 1기 보험료는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책자의 안내에 따라 보내드린 보험료신고서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신고서 하단 및 책자 내 관할지사 안내 참조)에 **2013년 4월 1일(월)**까지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팩스 접수 -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전자납부도 가능)
-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우편 접수 - 2013년 4월 1일(월)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출된 **보험료**는 같이 보내 드린 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2013년 4월 1일(월)**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보험료 신고·납부를 위하여 가급적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 받으신 후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4월 1일(월) 경과 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위 기일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보험료신고서 서식을 보면서 본 책자에서 설명하는 작성 요령 순서대로 작성하면 편리하게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래 「건설업 보수총액의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은 건설업 본사·건설일괄사업장의 보수총액 산정시 유의할 점을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설업 보수총액의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1. 2012년 확정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2%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2%

〈유의사항〉

- 외주공사비를 재료비 등 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외주공사비를 포함하여 산정
- 건설일괄 신고대상 공사
 - 자기공사 및 원도급공사
 - 하도급공사는 제외. 단 **하도급공사중 하수급승인 받은 공사는 포함**
 ※ 하수급승인 받은 공사내역을 모를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관할지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 공단에서는 매년 국제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확정보험료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선정하여 **과거 3개년도까지 신고한 확정보험료에 대해 조사(확정정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확정정산 제도 관련 동영상은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 2. 2013년 개산 보수총액 산정 방법
 - **개산(추정) 보수총액이 확정 보수총액의 70/100~130/100범위내에 있을 경우는 확정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산정**
 예시) 2012년 확정 보수총액이 10,000,000원이고 2013년 개산(추정) 보수총액이 8,000,000원일 경우
 2013년개산(추정) 보수총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

I. 공통사항

가 신고사업장 현황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공단담당자: ※사업장작성자: (전화번호:)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가 신공 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공사명(건설공사):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사업구분

사업구분은 일반사업장(건설업본사, 주한미군중사자 등), 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벌목업, 해외사업장(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12. 1. 21. 이전 승인 받은 사업장에 한함)중 해당 사업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구분코드(1자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중복된 사업장: 준등록번호(10자리)+구분코드(1자리)

□□□ - □□ - □□□□□ - □

○ 사업장의 일반적인 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확인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기재

- 휴대전화, 이메일 등은 신고기한, 납부기한 등 안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편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

-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시행으로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모든 안내문에 ‘도로명 주소’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신고서 서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도로명 주소가 아닌 사업주께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 변경사항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II. 『건설업 등』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나 201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나 (201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 월별인원, 월별보수총액 등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인원을 기재합니다.

⇒ 일괄유기사업장 등 건설업 현장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2012.1월~12월[직영근로자 보수 + 하도급근로자 보수(외주비 × 하도급노무 비율 32%)]

※ 단, 외주비를 월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월할 적용하여 산정

○ 월별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
[월보수총액 ÷ '12년 건설업 월평균보수 (2,597,274원)]

○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수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본사 소속 현장소장, 기사 등 직원에 대한 보수)

☞ 고용보험 보수 = 전체 근로자의 보수 -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보수

예시> 산재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현장소장, 기사 포함)
전체 근로자 보수

※ 산재보험은 대표자 보수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은 대표자 보수와 만64세 이상 근로자 보수(64세가 된 날이 속한 달부터)를 제외합니다. 산정한 보수총액을 ㉠항목 산재·고용보험『합계』금액에 기재하며, 이 금액이 5페이지 ㉡항목 2012년 확정보험료 ①보수총액(2012년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보수관련 자세한 사항은 18페이지 참조).

○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 하도급 노무비율(32%) 사용

건설공사(일괄유기사업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합니다.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비 × 하도급노무비율 32%)] × 보험료율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는 포함하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업체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토털서비스 가입은 16페이지 참조).

※ 공단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제4항에 의거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 됩니다.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소속 근로자(상용직)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계산시 해당 보수를 제외합니다.

㉡ 2012년 확정보험료 (예시)

㉡ 2012년 확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일반)요율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2-01-01 ~ 2012-12-31	122,212,275	10.85/1,000	1,326,000
	고용 보험	실업급여	2012-01-01 ~ 2012-12-31	122,212,275	11/1,000	1,344,33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2-01-01 ~ 2012-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649,860

○ ① 보수총액

4페이지 ㉡항목 201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② 보험료율

-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개별)요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일반)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2012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등

2012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비율(해당사업장 한함)을 산재보험료율과 합산 표시하였으며,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text{③확정보험료액} = \text{①보수총액} \times \text{②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고용보험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여 합산)

☞ 예시)

위 ㉠항목의 ②번 고용보험료율에서 '12.1.1~'12.12.31까지 실업급여가 11/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2.5/1,000이므로,

- 실업급여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 \times 11 \div 1,000 = 1,344,335.025$ 원(10원미만 절사) → 1,344,33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 \times 2.5 \div 1,000 = 305,530.68$ 원(10원미만 절사) → 305,530원

※ 고용보험료 계 = 1,344,330원 + 305,530원 = 1,649,860원

라 2013년 개산보험료 (예시)

▼ 아래 ㉠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5페이지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라 (2013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여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3-01-01~ 2013-12-31	122,212,275	10.84/1,000	1,324,78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 보험	실업급여	2013-01-01~ 2013-12-31	122,212,275	11/1,000	1,344,33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3-01-01~ 2013-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649,860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 근로자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 ⑧보수총액

- 2013년도 1년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입니다.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예시)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금액이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800만원이더라도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800만원÷1,000만원×100=80% →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30% 사이)

○ ⑨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2013년도 산재보험료 일반요율 : 건설업 37/1,000, 건설업본사 10/1,000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개별)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개별실적요율대상은 성립일이 2009.7.1. 전이고, 건설업본사 등 일반사업은 상시근로자 20인이상,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은 2011년도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개별)요율』은 귀사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조사서』를 토대로 2013.2.15.까지 결정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입니다. 따라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사업장임에도 일반요율로 안내된 경우는 공단 담당자에게 정확한 요율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임금채권 부담금 비율 : 0.8/1,000

-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비율 경감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6호)

- 2013년도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고시요율의 25%)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퇴직보험(일시금신탁),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일시금신탁) 등에 가입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감을 받으시려면 별도의 부담금경감신청서(퇴직보험 등 가입확인서, 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 0.04/1,00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도 (환경부고시 제2012-235호)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석면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환경부)하였고, 이에 2011.1.1.부터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유기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인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2013년도 고용보험료율

구 분		2013년도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전 사업 동일	5.5/1,000	5.5/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없음	2.5/1,000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없음	4.5/1,000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없음	6.5/1,000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없음	8.5/1,000

※ 기재된 요율이 사업장의 실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요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당한 요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료율도 사업주 신고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추후 확인되면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⑪ 일시납 및 분납여부 선택

라 (2013)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여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3-01-01~ 2013-12-31	122,212,275	10.84/1,000	1,324,78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 보험	실업급여	2013-01-01~ 2013-12-31	122,212,275	11/1,000	1,344,33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3-01-01~ 2013-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649,860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 ⑪ 분할납부 여부에 일시납부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하시면 3%의 공제 혜택(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경감)이 있습니다. (⑪ 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 일시납부에 표시)

☞ 분할납부를 선택하시면 해당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고(⑪ 분할납부 여부 항목 [✓] 분할납부에 표시), 보험료 신고서식 뒷장의 바 항목으로 이동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바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개선보험료 납부기한: 제1기4.1 제2기5.15 제3기8.16 제4기11.15)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해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6		사업장명	(주)00건설	
구 분		개선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324,780원	331,210원	331,190원	331,190원	331,190원
고용 보험	실업급여	1,344,330원	336,090원	336,080원	336,080원	336,08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5,530원	76,390원	76,380원	76,380원	76,380원
	계	1,649,860원	412,480원	412,460원	412,460원	412,460원

2013년 3월 26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⑩ 2013년도 개선보험료(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를 4등분하되 2기 이후 금액은 10원 미만 금액을 버려 균등하게 기재하고, 전제금액에서 2기~4기 금액 합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1,344,330원 \div 4 = 336,082.5원$ 이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336,080원을 위의 서식과 같이 제2기부터 제4기 금액에 기재하고 개선보험료총액 1,344,330원에서 제2기~제4기의 합산금액인 1,008,240원을 뺀 336,090원을 제1기에 기재

- ※ 『개선보험료』는 앞면 ⑩번의 개선보험료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과납액을 개선보험료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4회 분할하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계좌이체를 4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2기(5월 15일 납기)부터 자동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 및 분할 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진납부 제도의 특성상 자동계좌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자동계좌이체 신청사업장도 2013년도 일시납부 보험료 및 제1기(납부기한 4월 1일)보험료는 자동계좌이체 처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내역 - 개별 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보험료 신고서 뒷면 오른쪽 상단에 건설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고용보험 자영업자』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12. 1. 21. 이전 승인 받은 사업장만 해당)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확정보험료 신고가 없으므로 ㉠, ㉡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13년도 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013년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수액 : 월 1,920,000원, 연간 보험료 57,600원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분할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57,600원을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납부합니다.
- 보험료 미납부 또는 보험료신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료율	㉣개산보험료액(㉡×㉢)	㉤분할납부여부
	산재보험(임금채권보상금 등 포함)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 보험	실업급여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3-01-01~ 2013-12-31	23,040,000	2.5/1,000	57,600	
		계	—	—	—		

Ⅳ. 추가납부할액, 충당액 및 반환액의 작성 방법(산재·고용보험 각각 확인 및 작성)

- ㉢확정보험료액과 ㉣신고한 개산보험료액(2012년에 신고한 개산보험료 금액)을 비교하여

㉠ (2012년 확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료율	㉣확정보험료액 (㉡×㉢)	개산보험료액 (㉣신고액 ㉤납부액)		㉥추가납부할액 (㉣-㉤)	㉦초과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상금 등 포함)		2012-01-01~ 2012-12-31		/1,000					충당액	반환액
	고용 보험	실업급여	2012-01-01~ 2012-12-31		/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2-01-01~ 2012-12-31		/1,000						
	계		—	—	—						

▼ 아래 ㉢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2013)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료율	㉣개산보험료액 (㉡×㉢)	㉤분할납부 여부	㉥(201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상금 등 포함)		2013-01-01~ 2013-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고용 보험	실업급여	2013-01-01~ 2013-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구분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13-01-01~ 2013-12-31		/1,000			1월	명	원	명	원
		계	—	—	—			2월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 ③확정보험료액이 ④신고한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은 경우

(③-④)금액을 ⑥추가납부할액으로 기재하고, ⑩개산보험료[일시납은 3%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 후의 금액, 분할납부는 제1기 분할금액]와 **합산 납부합니다.** (13페이지 납부서 작성요령으로 이동하여 작성합니다.)

※ ⑤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④신고한 개산보험료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2012년도 체납보험료입니다. 체납보험료는 건강 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확정보험료액이 ⑤납부한 개산보험료액보다 적을 경우

(⑤-③)금액이 ⑩개산보험료액을 3%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당액에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⑦초과액(⑤-③)	
총당액	반환액

▶ 기재 후에 아래 작성법을 참고하여 보험료신고서식 뒷면의 ㉠항목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⑤-③)금액이 ⑩개산보험료액을 3%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산 보험료 일시납부를 선택하시고, 3%공제한 개산보험료액(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경감)을 총당금액으로 기재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작성예시)

③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⑤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 1,577,320원, ⑩ 개산보험료액 : 752,320원 일 경우, 확정보험료액 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752,000원)

개산보험료액을 752,320원을 3%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후 금액으로 계산하면, 3%공제금액은 22,560원 (752,320×0.03=22,569, 10원 미만 절사)이므로 729,760원이 됩니다.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729,760원을 초과하므로 ⑪ 분할납부여부를 일시납으로 선택하시고, ⑦ 초과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⑦ 초과액(⑤-③)

⑦초과액(⑤-③)			
	총당액		반환액
	729,760		95,560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충당이나 반환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 뒷면 ㉨ 항목 분할납부신청서상의 1기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경감)을 기재하는 것이며,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앞면 ⑩번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한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 경감)을 기재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1	사업장명	(주)00건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법 등 포함)	729,760원	729,760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계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로)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		예금주: (주)88건설(법인계좌)	

※ 반환금총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6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산보험료 일시납(3%공제 후)에 전액 충당되기도 잔여액이 남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환 대상액을 앞면 ⑦번 초과액 란의 반환액에 기재하고 위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후 반환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 사본(사업장관리번호 기재)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개인계좌, 법인사업주는 법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1기를 충당하고 남은 경우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충당가능 금액을 기재(이 경우 1기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납부 2기분 납부기한(5.15)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7	사업장명	(주)건설사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법 등 포함)	(1기) 188,080원	(1기) 188,080원	0원
	(2기) 188,080원	(2기) 15,940원	172,14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계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반환금총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6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충당할 때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간에는 상호 충당할 수 없습니다.

납부서 작성 요령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9,200원
②개산보험료	105,950원
③개산 3%공제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간설공사 제외)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 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 별로 납부할 징수금 중독(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총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 계	14,000원
② 개산 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 계	904,1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 계	27,11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간설공사 제외).		
○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① **확정보험료** = 신고서 앞면 **㉠** 항목 ⑥번 추가납부할 액 (신고서 앞면 ③ 확정 보험료액-④개산보험료 신고액) → (+)값으로 기재
 확정총당액 = 신고서 앞면 **㉠** 항목 ⑦번 총당액 → (-) 값으로 기재
 ※ 기존 체납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

② 개산보험료

일시납의 경우 = 신고서 앞면 **㉠** 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
 분할납부의 경우 = 신고서 뒷면 **㉡** 항목 제1기 보험료액

③ 개산 3% 공제액

일시납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신고서 앞면 **㉠** 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 × 0.03 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리고 산출한 금액

예시) 707,600원 × 0.03 = 21,228 → 21,220원,

196,550원 × 0.03 = 5,896 → 5,890원

※ 분할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④ 전자신고 경감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보험료신고를 할 경우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을 경감

☞ 전자신고시 보험료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1.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각각 적용)
2.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3. 고용보험 자영업자

※ 16페이지 토탈서비스 안내 참조

⑤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의 산식으로 산정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납부자용 영수증과 수납기관용 영수증서상의 납부할 금액란에 동일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 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구분	금액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재권보장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9,200원	수입징수관계자		수입징수관계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납부할 금액		86,750원	
③ 개산 3%공제	원	납부기한		2013년 4월 1일	
납부할 금액(①+②-③-④) 86,750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채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1588-0075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담당자: △△△ 전화번호: 1588-0075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총액(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총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 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구분	금액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 계 14,000원	수입징수관계자		수입징수관계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 계 904,150원	납부할 금액		886,040원	
③ 개산 3%공제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 계 27,110원	납부기한		2013년 4월 1일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①+②-③-④) 886,040원		담당자: △△△ 전화번호: 1588-0075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담당자: △△△ 전화번호: 1588-0075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 ○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채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정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실제 납부서 작성시 추가납부할 금액 혹은 초과납부액 처리방식(틀리기 쉬운 점)

보험료신고서의 앞면 다항 ⑥번 추가납부할 액을 납부할 때 ⑩번 개산보험료를 먼저 3%공제(일시납부할 경우)한 다음(또는 분할납부 제1기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개산보험료 금액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신고 시에는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을 추가 경감합니다.

⑥번 추가납부할액 10,000원, 개산일시납 100,000원이라면 → 개산 3%공제 후 97,000원, 납부할 금액 97,000(전자신고시 92,000원)+10,000원=107,000원(전자신고시 102,000원)이며, 개산보험료를 4회 분납하는 경우에도 1분기는 25,000원(전자신고시 20,000원)+10,000원=35,000원(전자신고시 30,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⑦번 초과납부액을 총당하는 경우에도 ⑩번 개산보험료를 먼저 3%공제(일시납부할 경우)한 다음(또는 분할납부 제1기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개산보험료 금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신고시에는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을 추가 경감합니다.

⑦번 초과액(총당액) 10,000원, 개산일시납 100,000원이라면 → 개산 3%공제 후 97,000원, 납부할 금액 97,000(전자신고시 92,000원)-10,000원=87,000원(전자신고시 82,000원)이며, 개산보험료를 4회 분납하는 경우에도 1분기는 25,000원(전자신고시 20,000원)-10,000원=15,000원(전자신고시 10,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확정 추가납부(초과납부) 보험료는 3%공제 또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산보험료도 분할 납부한다면 3%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 안내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셨으면, 보험료신고서 서식 내의 아래 부분 접수처를 확인하여 방문, 팩스, 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험료는 납부서 뒷면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 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팩스 접수 (팩스번호 : 24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안내 참조)
 - 보험료 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는 사업주께서는 전자팩스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2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
 - 일반팩스와 달리 통화중 대기 현상이 거의 없으나, 만일, 통화 중이면 일반팩스로 신고서 송신 후 직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팩스 수신여부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제공하던 '자동 수신알림 서비스'는 2012년 10월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전자팩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폭주 시간대인 13~17시를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전자납부도 가능)
 - ※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
- ▶ 우편 접수 : '13. 4. 1.(월)까지 도착되어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 가입 안내

토탈서비스란?

고용·산재보험 민원업무를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험가입, 납부서 발급,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보험료 신고·납부 때문에 공단 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토탈서비스 업무 범위 :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통지, 전자납부, 정보조회

○ 가입 방법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터넷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가입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토탈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 가입
- ※ 단, 전자신고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 「토탈서비스이용신청서」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서식 이용

○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시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각각 5천원씩 경감

- 단,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 ①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각각 적용)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 ③ 고용보험 자영업자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보험료 신고 요령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① 우측의 ‘보험료 신고 바로가기’ 클릭 또는 ‘전자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 신고서 들어가기’클릭
- ② 보험구분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보험년도 : 2013 선택, 신고서 구분 : 확정및개산 → 조회 클릭
- ③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항목 입력

[별지 제23호 서식]

보험 구분 *	☒ 고용보험 ☒ 산재보험(임금채권)	사업장 상태 *	정상 v
사업장관리번호 *	관리번호 선택 v	보험년도 *	2013 v
신고서 구분 *	확정및개산 v	사업장명	

※ 보험구분, 관리번호, 신고서 구분을 선택하고 우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총액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 임시저장자료 삭제는 상단메뉴 [마이페이지] - [임시저장조회]에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

3 사업장정보

아래사업장 정보가 없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	E-mail	@ v

④ ‘확정 보수총액’입력

4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확정보수총액	요율	확정보험료	신고한개산	추정액 초과액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2012-01-01 ~ 2012-12-31		/ 1,000			
합계							
고 용 보 험	실업급여	2012-01-01 ~ 2012-12-31		/ 1,000			
	합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2012-01-01 ~ 2012-12-31		/ 1,000			
	합계						

⑤ ‘확정보험료산정기초자료’입력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 월별인원, 월별보수총액 등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인원을 기재합니다.

⇒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사용하는 일괄유기사업장 등 건설업 현장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신고책자 4~5페이지 참조)

⑥ ‘개산 보수총액’, 납부구분(일시납/분할납부)선택, 작성된 보험료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접수’클릭(접수완료)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수추정액)	요율	개산보험료	납부구분
산 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합계					
고용보험	설업급여	~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합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1,000		
확정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기재			☐ 근로자감소 ☐ 휴업일 ☐ 기타		

※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입력시 주의사항

2013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2012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2012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신고책자 6~7페이지 참조).

⑦ 납부서 인쇄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우체국에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신용카드 납부관련 20페이지 참조)

보수총액 범위 예시

보수의 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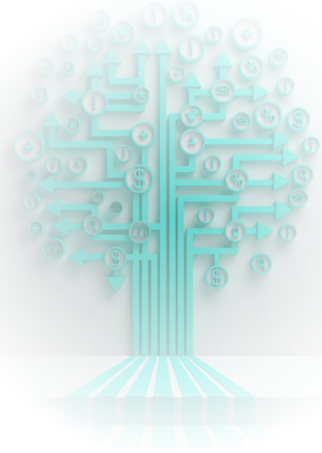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고용·산재보험료 보수 산정 대상)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실적급여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예(고용·산재보험료 보수 산정 제외)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됨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무료서비스 안내

우리 공단은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6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무료로 대행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서비스 내용

- 무료 대행 업무 :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성립), 보험료·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신고 및 폐업(소멸)신고 등 각종 신고 및 주요 업무 일체
- 이용방법 : 가까운 대행기관을 선택하여 위·수탁계약 체결 후 고용·산재보험 사무 위탁
※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참조하세요.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안내

- **결제가능카드** : 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BC·외환카드, 광주은행카드

모든카드		고용 산재보험 납부 전용카드	
전화원	• 삼성카드	전화원	• 국민카드 • BC카드 • 광주은행카드
개인회원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개인회원	• 외환비즈니스카드
법인회원	• 외환카드(일부카드 제외)	법인회원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롯데카드 : '아멕스카드, JCB카드' 결제불가

※ 카드이용 한도금액 : 카드사 및 거래은행 영업점에 사전 확인 후 결제

- **결제장소**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카드), 은행 영업점(BC카드 거래은행 영업점, 광주은행)

※ 결제시 보험료 신고서 및 납부서 반드시 지참

- **결제방법(일시납 결제 불가)**

- **무이자 할부(2~9개월)** : '13년도 개산보험료 전액(10만원 이상, 일시납부)을 결제하는 경우 함께 납부하는 '12년도 확정보험료를 2~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결제 가능

※ 무이자할부 결제는 '13. 3. 4.~4. 1.까지만 가능하며, '13년도 개산보험료 3%공제 혜택은 없음

- **유이자 할부(2~9개월)** : '13년도 분할납부 개산보험료 및 '12년도 확정보험료

※ 고객이 할부 수수료 부담(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 별 상이)

- **신용카드 결제 불가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월별 부과지 보험료) 및 체납보험료

[알 림]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13. 4. 2. 이후 신용카드 납부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향후,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반드시 사전에 변경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 안내

우리공단은 고객님의 **스마트폰**으로 보험료 납부서를 전송하는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바일 고지 서비스의 장점

첫째, 종이 납부서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납부서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셋째, 가까운 편의점, 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고지 대상 보험료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의 「2, 3, 4기」 분할납부 보험료

※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도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보험료신고]-[모바일고지신청]에서 신청하거나,
- ②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자료마당]-[서식자료]에 게시된 「고용 및 산재보험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접수

기 타 안 내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가. 건설본사: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의 보수기준 해당 근로자

나.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허가받은 벌목재적량이 2,700m³ 미만인 벌목현장의 보수기준 해당 근로자

-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 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장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②필히 아래 기한 내에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 건설본사: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4월 10일~30일까지

나. 건설공사 및 벌목현장: 공사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

• 알아둘 사항

가.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취득이 된 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법정기한 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자격취득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0).

나.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건설공사 및 벌목현장의 경우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보수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지원기준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130만원 미만
지원율	105만원 미만 :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110만원 미만 :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10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고용보험료의 1/3 지원	11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 고용보험료의 1/3 지원

보험료 경감 특례제도 안내

- 2011년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보험료를 경감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합니다.
- 경감대상 :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단,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한함)
- 경감률의 산정
 - 사업장단위 경감률은 사업장 전체의 임금과 보수를 기준으로 경감률 산정
 - 근로자개별 경감률은 근로자 개인의 임금과 보수를 기준으로 경감률 산정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15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산재보험 건설업·벌목업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적용 안내

2011. 1. 1부터 건설업·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청(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국외근로자 공급사업 제외).

소규모 건설공사 당연적용(의무가입) 안내

2009. 1. 1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신청 안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신청(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③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④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퀵서비스업자
- 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건설업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제도 안내

건설업은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서와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현장 관할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하도급공사 착공 후(착공일을 포함한다)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하수급공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안내

구 분	2012년	2013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7/1,000	37/1,000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28%	28%
하도급 건설공사 노무비율	32%	32%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17/1,000	17/1,000
주한미군 산재보험료율	7/1,000	7/1,000
임금채권부담금율	0.8/1,000	0.8/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0.05/1,000	0.04/1,000

※ 임금채권부담금비율·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은 산재보험료율에 합산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변경 안내

변경된 행정구역	변경전 관할지사	변경후 관할지사	변경일
서울시 성북구	서울지역본부	서울북부지사	2013. 1. 1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북부지사	서울지역본부	2013. 1. 1
경기도 용인시	평택지사	수원지사	2013. 1. 1
경북 울진군	포항지사	태백지사	2013. 2. 1
강원 동해시	강릉지사	태백지사	2013. 2. 1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안내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담당지역(업무)	전자팩스번호	일반팩스번호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100-705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국동빌딩 22층	중구(전업종), 동대문구, 종로구(건설만)	0502-223-3101	02-2230-9486
	가입지원2부	100-705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국동빌딩 22층	동대문구, 종로구(건설제외)	0502-223-3201	02-2230-9480
서울강남지사	가입지원1부	135-83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동타워 10층	삼성, 일원, 대치, 수서, 세곡, 율현, 자곡동 (건설제외)	0502-345-3101	02-3459-7191~2
	가입지원2부	135-83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동타워 13층	건설업 전체 및 논현, 신사, 압구정, 청림, 역삼, 개포, 도곡, 역삼동	0502-345-3200	02-3459-7250~2
서울서초지사	가입지원1부	137-72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16층	서초구 반포동, 방배동, 양재동	0502-217-2101	
	가입지원2부	137-72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16층	서초구 서초동, 잠원동, 기타동	0502-217-1200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1부	138-731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4층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건설만)	0502-343-1100	
	가입지원2부	138-731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4층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건설제외)	0502-343-3100, 4101	
서울성동지사	가입지원부	133-835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가영빌딩 4층	성동구	0502-460-2100	02-460-3580
	가입지원1부	121-854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 구르라자 12층	마포구, 서대문구(건설만) 용산구, 은평구(전업종)	0502-207-3100	02-701-8685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2부	121-854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 구르라자 10층	마포구, 서대문구(건설제외)	0502-207-4100	02-701-8179
	가입지원1부	150-722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당산동4가) 동양타워 10층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건설만)	0502-216-3100	02-2165-3288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2부	150-722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당산동4가) 동양타워 10층	영등포구(건설제외 전업종)	0502-216-4100	02-2637-3593
	가입지원1부	131-857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리베로빌딩 2층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전업종) 성북구, 노원구(건설만)	0502-844-3100	02-988-3435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부	131-857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리베로빌딩 2층	성북구, 노원구(건설제외)	0502-844-4100	02-986-7440
	가입지원1부	152-75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0층(구로동, 키크스벤처센터)	구로구, 동작구(전업종), 관악구, 금천구(건설만)	0502-210-3100	02-2109-2371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2부	152-75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0층(구로동, 키크스벤처센터)	관악구, 금천구(건설제외)	0502-210-4100	02-2109-2382
	가입지원1부	480-848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5 축협빌딩 5층	의정부시, 포천시(전업종), 2부지역 건설업	0502-828-3100	031-828-3175
의정부지사	가입지원2부	480-848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5 축협빌딩 3층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건설제외)	0502-828-4100	031-828-3171
	가입지원부	200-972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7층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가평군	0502-301-3100	033-240-6162, 6116
태백지사	가입지원부	235-706	강원도 태백시 광장로 32 3층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울진군	0502-311-3100	033-550-0555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210-954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한국빌딩 3층, 4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0502-330-3100	033-640-9198
원주지사	가입지원부	220-915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	원주시, 횡성군	0502-340-3100	033-749-2346
영월지사	가입지원부	230-80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충로 33(영월2리 950-0) KT 3층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502-371-3100	033-371-6198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부	601-837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아모레퍼시픽B/D 7층	중구, 동구, 서구, 시하구, 영도구, 남구	0502-661-3100	051-661-0229 051-661-0249
	가입지원1부	614-728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부전1동 91-5 동아빌딩 12층	부산진구, 연제구	0502-801-2100	051-801-4179, 4139
부산중부지사	가입지원부	609-817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길 26)부곡동 64-31 부산합동청사 2층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0502-550-3101	051-550-3101.2
부산북부지사	가입지원부	617-807	부산 사상구 사상로 196(래퍼드 546-11) 한빛빌딩 3층	사상구, 북구, 강서구	0502-318-3100	051-320-8193
창원지사	가입지원1부	641-71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 244 (신월동, 국민연금공단 3층)	진해구, 함안군, 의령군 마산 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상호빌(사,오,리,마,지,차,크)	0502-268-3100	055-268-0005,6
	가입지원2부	641-71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 244 (신월동, 국민연금공단 3층)	의창구, 성산군, 창원군 건설 상호빌(사,오,리,마,지,차,크)	0502-268-4100	055-268-0008
울산지사	가입지원부	680-845	울산 남구 문수로 330 공작빌딩 4층	울산광역시	0502-218-3100	052-226-4188
양산지사	가입지원부	626-821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시, 간성시, 밀양시	0502-380-3100	055-380-6350.1
진주지사	가입지원부	660-724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88 아이비타워 6, 7층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함창군	0502-766-3100	055-760-0191
통영지사	가입지원부	650-822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미래메디칼빌딩 6층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0502-001-3100	055-640-7140.1
대구지역본부	가입지원부	700-740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경일종합금융빌딩 8층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군	0502-599-3101 0502-601-1100	053-428-5377
	경산지사	712-802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도련빌딩 7층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02-819-2101	052-819-1100
대구서부지사	가입지원부	704-91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두류동 495-45) 감성빌딩 9층	달서구, 상구군, 고령군	0502-609-3100	053-609-5454
대구북부지사	가입지원부	702-856	대구 북구 침산로 142 화성투어빌딩 3층	대구 북구, 서구, 칠곡군, 군포군	0502-607-3100	053-607-4399
포항지사	가입지원부	790-826	포항시 남구 대일로23 KT&G 3층	포항시,경주시, 영덕군,울릉군	0502-288-3100	054-288-5261
구미지사	가입지원부	730-914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구미시, 김천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0502-479-3101	054-479-9148,9
	영주지사	750-915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대성빌딩 10층	영주, 봉화, 상주, 문경	0502-639-3100	054-639-0123
안동지사	가입지원부	760-905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5층	안동시, 의성군, 철쭉군 예천군, 영양군	0502-850-3100	054-850-5444, 5
	가입지원1부	405-835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구월동 1143-4) 미추홀타워 6층	남동구, 연수구,송도, 선학, 연수, 연수, 송도(전업종) 남동, 동구, 송도(전업종)	0502-077-3101	0321451-9592
경인지역본부	가입지원2부	405-835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구월동 1143-4) 미추홀타워 7층	연수구(동촌, 청학동)(전업종) 남동, 동구, 중구(건설업 제외)	0502-451-4100	0321451-9430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담당지역(업무)	전자팩스번호	일반팩스번호
인천북부지사	가입지원1부	407-060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 세종팰리스빌딩 6,7층	강화군, 서구, 부평구(전입출)	0502-530-3100	032-540-4699
	가입지원2부	407-060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 세종팰리스빌딩 6,7층	계양구(건설제외)	0502-540-4100	032-544-7068
	가입지원1부	440-83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3층	수원시(건설제외), 용인시(건설제외)	0502-231-3100	031-242-2034, 2069
수원지사	가입지원2부	440-83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3층	화성시(건설제외)	0502-231-4100	031-242-2048
				건설업(수원, 용인, 화성)		031-231-4489
부천시지사	가입지원부	420-76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다성빌딩 9층	부천시, 김포시	0502-649-3100	032-650-0264
안양지사	가입지원1부	430-83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안양3동, 교보빌딩 8층)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0502-463-3101	031-463-0480
	가입지원2부	430-83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안양3동, 교보빌딩 8층)	안양시, 과천시	0502-463-4101	031-463-0485
안산시지사	가입지원1부	426-815	경기 안산시 용인로 347	시흥시(전입출), 안산시(건설만)	0502-481-3101	031-475-0745-6
	가입지원2부	426-815	경기 안산시 용인로 347	안산시(건설제외)	0502-481-4101	031-475-0747-8
성남지사	가입지원1부	461-72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의남문화회관빌딩 5층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이천시	0502-719-3100	031-720-1178
	가입지원2부	461-72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의남문화회관빌딩 6층	양평군(전입출), 2부지역 건설	0502-719-4100	031-720-1178
평택지사	가입지원1부	459-813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 타워 9층	성남 분당구,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건설제외)	0502-669-3100	031-669-8633
	가입지원2부	459-813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 타워 8층	평택시, 오산시(건설제외)	0502-669-4101	031-669-8634
고양지사	가입지원1부	410-8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빌딩 4층	평택시, 오산시(건설만), 안산시(전입출)	0502-669-4101	031-669-8634
	가입지원2부	410-8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빌딩 4층	파주시, 고양시 일산서구 덕양구	0502-810-3100	0502-810-3100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부	502-713	광주 서구 천변로 268 kab빌딩 10층	고양시 일산동구	0502-810-4100	0502-810-4100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지사	가입지원부	506-721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7층	구례, 목성, 담양, 화순	0502-608-3100	062-608-0248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	561-70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배들 3길 21-12(인후동1가 KT동전주 5층)	광주시 광산구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0502-702-2100	062-608-0448
	가입지원2부	561-70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배들 3길 21-12(인후동1가 KT동전주 5층)	완주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0502-600-3105	063-240-8199
익산시지사	가입지원부	570-210	전북 익산시 하남로 478(여양동626-1)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502-600-4100	063-240-8198
군산지사	가입지원부	573-030	전북 군산시 해방로 178 군산도시가스건물 2층	전주시	0502-839-3100	063-839-0112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530-711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KT빌딩 5층	전북 군산시, 김제시	0502-450-3101	063-450-0139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장흥군		
여수지사	가입지원부	555-705	전남 여수시 시청로 2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산안군	0502-240-3100	061-240-0107
제주지사	가입지원부	690-8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502-680-3100	061-680-0131, 0136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부	302-828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6층	제주특별자치도	0502-718-3100	064-754-6769, 6770
유성지사	가입지원부	305-150	대전 유성구 반석로9 더존타워 8층	대전시(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금산군	0502-870-3100	042-870-9399
				대전 유성군, 충남 공주시	0502-820-2100	042-820-5497
청주지사	가입지원부	360-808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원로 136번길 21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0502-229-3100	043-229-5050
충주지사	가입지원부	380-708	충북 충주시 천변로 261 향원회관 1-3층	옥천군,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0502-860-3100	043-840-0391
천안지사	가입지원1부	331-2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7층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0502-629-3100	041-557-6129
	가입지원2부	331-2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7층	천안시	0502-629-4100	041-557-6129
보령지사	가입지원부	355-936	충남 보령시 산설1길 19, 2-4층 (동대동, 청산빌딩)	충남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0502-849-3100	041-931-1186 041-936-1184

※ 전자팩스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2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합니다.
 ※ 가급적 전자팩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전자팩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일반팩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팩스 관련 안내

전자팩스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폭주 시간대인 13시~17시를 가급적 피하여 전송하여 주시고, 수신여부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전자팩스수신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신고는 빠르고 편리한
고용 ·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세요

고용 · 산재보험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7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센터마당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사이버 감사실